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15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2. 24

판결 선고 2021. 3. 1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579,354원과 그중 14,579,262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 6. 2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0 . 1. 30. 접수 제1752 호로마친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가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9. 2. 14. 원고와 신용보증원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가 C 은행에 2020. 2. 경부터 위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6. 4. 원고가 C은행에게 14,952,39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373,13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보증원금으로 14,579,262원이 남아 있다.

한편,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A는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연 9%)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데, 2020. 6. 3. 기준 확정손해금은 92원이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1.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4,417,354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4. C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 28.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판결 등 참조).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2019. 2. 14.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약 2주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5개월 뒤에 원고가 보 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 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 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한 날이 2019. 11. 18.이라고 주장하나, 을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피고 B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